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0조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으나, 공제금 청구 시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의 피해 회복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, 60일 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 전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중전의 제6호)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5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(거래당사자가 「공인중개사법」 제42조에 따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	
연 락 처	(044) 201 - 3348